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권한 위임 및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등 권한 위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1)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타인의 등록증 사용자에 대한 조사 및 등록 취소에 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

나.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기준 완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1) 산지복구 감리시 복구비 예치금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현실화
다. 종전 산림기술자를 현행법의 산림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제처 권고사항 이행(안 부칙 제2조)

1) 종전의 산림기술자 중 기술2급을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여 입법미비 사항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 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 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대여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4.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별표 5의 감리의 산지복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복구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별표 5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지복구 감리에서 공사비란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931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으로,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대여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u><신설></u>	4.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u><신설></u>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 · 감독
3. (생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310호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310호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치)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연 락 처	(042) 481 - 8816